

첨부서류	「저작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(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-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-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(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, 법원 결정문 등) - 등록권리자·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「저작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-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「저작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-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(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,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) - 등록권리자·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-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-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: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: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: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: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	수수료(1건)	
		신청물 10건까지	
		방문·우편: 70,000원 인 터 넷: 60,000원	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: 15,000원
		「저작권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: 없음(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)	
		등록면허세 (교육세 포함, 1건) 24,000원	

신청방법

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, 우편 또는 인터넷(www.cros.or.kr)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프로그램 권리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